

「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」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년 5월 7일, 남진삼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5년 6월 9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5년 6월 10일 상정 ·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남진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의회 표창 조례」 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
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의회 공무원의 공직 가치관을 함양하
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포상 대상 규정(안 제2조)
- 포상 절차 규정(안 제3조)
- 포상 시기 규정(안 제4조)
- 수당지급 및 지급 중지 규정(안 제5조~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「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」 검토보고서 1부.

2. 「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」 1부.

「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」

첨 토 보 고 서

1. 규칙안 개요

- 제 안 자 : 남진삼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5. 7.
- 회부일자 : 2025. 6. 9.
- 상정일자 : 2024. 6. 10.

2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의회 표창 조례」 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의회 공무원의 공직 가치관을 함양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포상 대상 규정(안 제2조)
- 포상 절차 규정(안 제3조)
- 포상 시기 규정(안 제4조)
- 수당지급 및 지급 중지 규정(안 제5조~제6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9조 및 「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제5조제5호에서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나. 입법의 취지

- 군의회 공무원의 공직 가치관을 함양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2조(포상대상)에서 모범공무원의 대상을 규정함.
- 안 제3조(포상절차 등)에서 모범공무원의 포상 절차를 규정함.
- 안 제4조(포상시기 등)에서 모범공무원의 포상시기 및 회수, 대상 인원 등을 규정함.
- 안 제5조(수당 지급)에서 모범공무원 수당 금액 및 지급일, 지급 기간, 휴직 시 지급 절차를, 안 제6조(수당지급 중지)에서 수당 지급 중지 사유를 규정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의회 공무원의 공직 가치관을 함양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지방공무원법

제79조(표창)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.

□ 평창군의회 표창조례

제5조(종류)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표창장
2. 상장
3. 감사장
4. 공로상
5. 모범공무원 포상

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

(남진삼 의원)

의안 번호	427
----------	-----

발의 연월일: 2025년 5월 7일
발의자: 남진삼 의원
찬성자: 심현정, 이은미, 이창열 의원

1. 제안이유

「평창군의회 표창 조례」 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의회 공무원의 공직 가치관을 함양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포상대상·절차·시기 규정(안 제2조~제4조)
- 나. 수당지급 및 지급 중지 규정(안 제5조~제6조)
- 다. 기록부 비치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모범공무원 규정」(대통령령)
- 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평창군의회 표창 조례」 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대상) 모범공무원이란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회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
2. 뛰어난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
3. 직원 간 소통과 협업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,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 선 사람
4.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

제3조(포상절차 등) 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의장에게 추천한다.

② 의회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 대상자의 행적, 직무내용,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③ 「평창군의회 표창 조례」 제5조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. 다만, 「모범공무원 규정」과 이 규칙에 따라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

④ 모범공무원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.

⑤ 모범공무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한다.

제4조(포상시기 등)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연 1회, 12월에 시행하고, 포상인원은 연 2명 이내로 선발하되,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조(수당 지급) ① 모범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의 수당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,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.

②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며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,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.

제6조(수당 지급 중지)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. 다만,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.

1.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
2.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
3.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
4.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

제7조(기록부 비치) ① 의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

법으로 작성 및 관리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관계법령]

지방공무원법

제63조(휴직)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1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
 2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
 3. 천재지변 또는 전시·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(生死) 또는 소재(所在)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
 4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
 5.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
-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1. 국제기구·외국기관, 국내외의 대학·연구기관,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,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
 2.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
 3.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
 4.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
 5. 조부모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. 다만,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

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.

6. 외국에서 근무·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

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·연구 등을 하게 된 때

모범공무원 규정(대통령령)

제1조(목적)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선발대상)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(이하 “모범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.

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.

제3조(추천)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(대통령 직속기관의 장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)과 서울특별시장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「상훈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친 후,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(功績調書)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선발) 모범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제5조(수당 지급) ① 모범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의 수당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,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남진삼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0